

佛등과 工所權協力強化

—特許情報資料利用, 商標保護등—

洪性佐 特許廳長은 지난 5月末 프랑스 파리에서 開催된 國際工業所有權保護協會(AIPPI) 第32次 總會에 參席코 歸國길에 프랑스 特許廳長을 만나 韓·佛間 工所權協力問題를 論議하는 한편 日本, 오스트리아에도 들러 그곳 特許廳長과의 會談도 가졌다.

프랑스와는 商標保護問題가 주로 討議되었으며 紛爭中인 商標權問題의 公正한 處理와 프랑스의 對韓特許技術資料提供擴大에 合意하였으며 오스트리아와는 韓國이 特許協力條約加入時 오스트리아 特許廳을 國際調查機關으로 指定키로 하였다.

日本 特許廳과의 會談에서는 韓·日 特許廳 最高責任者가 每年 定期交換訪問키로 하는 한편 日本 特許廳과 特許情報센터(JAPATIC)가 保有하고 있는 最新 特許技術情報를 우리나라가 利用할 수 있도록 했다.

外國出願補助金支給推薦

—65件에 1,900萬원—

本會가 5月31日까지 接受 마감한 83年度 上半期의 外國出願費用補助金支給申請은 尹有澤氏의 「集光式集熱裝置」등 個人 53件, 中小企業 7件, 大企業 5件으로 모두 65件이다.

本會는 이들 65件에 대해 總 19,020,370원의 出願補助金支給을 特許廳에 推薦하였는데 83年

度 外國出願補助金豫算 3,000萬원중 上半期分인 1,500萬원으로 調整 支給될 豫定이다.

發明獎勵事業推進要領改正

—要保護對象者의 出願料免除—

特許廳은 告示 第83—13號(83. 6. 10)로 發明獎勵事業推進要領(特許廳告示 第83—12號)에 第8章을 新設, 生活保護法에 의한 保護對象者의 出願料등의 納付를 免除키로 하였다.

발명장려사업추진요령중 신설된 제8장은 다음과 같다.

제8장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출원료등의 납부면제

제57조 (영세발명인에 대한 출원료등 납부면제)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발명·묘안을 한 자(이하 “영세발명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출원료등의 납부를 면제한다.

제58조 (면제대상자) 출원료등의 면제대상자는 본인이 발명·묘안을 하여 본인명의로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출원(이에 관련된 분할출원 및 변경출원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공동출원의 경우로서 공유자 전원이 영세발명인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59조 (면제범위) 영세발명인에 대하여 면제하는 출원료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이후의 출원료등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

출원료, 심사청구료, 출원공고료 및 최초 3
년분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

2. 의장(유사의장 포함) 등록출원의 경우
출원료 및 최초 3년분의 등록료

제60조 (증명서류의 제출) 영세발명인이 출원료
등을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특허청에 출원등
의 절차를 밟을 때에 제출하는 서류에 거주
지의 읍·면·동장이 발급한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미 다른 절차
에 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자는 그 서
류를 원용한다는 취지를 당해 서류에 기재하
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②(폐지)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출
원료등 요금납부면제요령(특허청고시 제81-8
호)은 이 고시 시행과 동시 폐지한다.

三星半導體, 멜로디 IC開發

—아기벨등 7種—

三星半導體通信株式會社(代表:姜晋求)는 기
저귀에 물이 묻으면 노래가 나오는 아기벨과
크리스마스캐롤등 7種의 멜로디 IC를 開發하였
다.

그동안 멜로디 IC는 美國, 日本 등으로부터
全量 輸入해왔으나 이번 開發로 차임벨, 自動
車, 各種 玩具類用的 멜로디 IC에 대한 國內需

要를 充當하고 輸出도 할 수 있게 되었다.

現代重工業 特許管理強化

—6.1, 發明特協加入—

現代重工業株式會社(代表:鄭蒙準)는 產業技
術情報時代를 마지하여 特許管理體制強化를 위
해 6月1日 韓國發明特許協會에 加入하는 한편
特許管理部署의 創設準備作業을 한창 進行中에
있다.

準備作業에 東奔西走하고 있는 技術開發研究
部 河龍振 次長은 數年內에 우리나라 基幹産業
으로서 造船 등의 重工業分野에서는 으뜸가는
特許管理體制를 構築하겠다고 한다.

出願明細書作成要領等 廢止

—6.10字 特許廳告示 83-14號로—

特許廳은 告示 第2號(1977.5.4)에 의해 施行
해 온 「出願明細書의 作成要領 및 指定商品等
의 記載要領」을 現行 特許法施行規則 및 商標
法施行規則에 各各 反映되어 있다는 理由로 19
83.6.10字 特許廳告示 第83-14號에 의해 廢止
하였다. 이 廢止告示는 告示한 날로부터 施行
된다.

大韓辨理士會 事務所 移轉

大韓辨理士會(會長:李俊九)는 6月13日 事務
所를 서울 江南區 瑞草洞 55-4 金成빌딩 4層
으로 移轉했다.

電話番號는 從前과 같이 567-3068